#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8

발의연월일: 2020. 7. 9.

발 의 자: 장철민·김진표·임오경

박영순・윤미향・야전비

최종윤・안호영・홍영표

맹성규・김민철・양이원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 게 보상하여 그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은 2019년 기준 68.5%로 독일(74%), 호주(79%), 미국(85%), 스위스(84%) 등 보다 낮아 재해근 로자의 직장복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직업복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직업능력 평가·작업환경 조사 등의 조치 및 직업 재활을 위한 의료기간 지정과 우대조치를 규정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더욱 실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5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직업복귀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남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 중이나 요양 종결후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
- 2.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등에 대한 평가
- 3. 해당 근로자가 복귀하려는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조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및 조사 등
- 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75조의2(직업복귀 지원) ① 공 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 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 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남
	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직업복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
	생할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 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
	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직장복귀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 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직장복귀
	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 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근로 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 중이나 요양 종결 후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호의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심리상

   담
- 2.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등에 대한 평가
- 3. 해당 근로자가 복귀하려는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조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검사 및 조사 등
- 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u>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u> <u>할 수 있다.</u>